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-102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, 국민권익위원회 '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'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 회피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용어를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순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(안 제10조의2)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

나. 심의 위원의 연임규정 및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규정 마련

(안 제14조제7항, 제14조제8항)

- "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"에 따라 심의 위원의 연임 규정 및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규정 마련

다. 조례 본문 중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

3. 개정근거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

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법률 제10736호, 2011.5.30)

나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7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2.10. 18 ~ 2012.11.7 (제출 의견 없음)

나. 부폐영향평가 :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모든 위원에 해당,
“위촉직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수정(안 제14조)
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위촉 위원 중 여성위원 40% 이상 위촉 권고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: (2012.11.15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4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, “징수등”을 “징수 등”으로, 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”을 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”으로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관한”으로 한다.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폐기물처리시설”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을 말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“사업시행자”라 함은 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”을 ““사업시행자”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설치비용 납부 의무자)”를 “(설치비용 납부의무자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제2조 제2호”를 “제2조제2호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6조제1항에 따라”로,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생활폐기물 :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.

나. 사업장폐기물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4조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4조에 따라”로,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도”로, “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”를 “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”로, “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시”를 “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”로, “연2회”를 “연 2회”로, “납부토록”을 “납부하도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, 상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,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납부장소와 납부기한,”을 “납부장소와 납부기한까지”로, “취하여질”을 “취하여야 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납부개시”를 “납기가 시작되기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징수 등) 사업시행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,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납부금액의”를 “납부금액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부지”를 “제1항에 따라 시설부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기획보한 부지의”를 “설치부지가 확정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진행중인”을 “진행 중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감정평가등”을 “감정평가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납부금액의”를 “납부금액 중”으로, “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”을 “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”을

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표1내지 3에 의하여”를 “별표 1부터 별표 3에 따르며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원가 계산등”을 “원가계산 등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1항 규정에”를 “제1항의 규정에도”로, “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4조제7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1인을 포함하여 10인”을 “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3명”을 “5명”로 한다.

제14조제5항 중 “위촉한 위원”을 “위촉위원”으로, “하되”를 “하되, 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전임자의 임기”를 “전임위원의 남은 기간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⑧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제15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회의를 통할한다”를 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연2회”를 “연 2회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1인과 서기 1인”을 “1명과 서기 1명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출석”을 “참석”으로,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지방재정법중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중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출납폐쇄후”를 “출납폐쇄 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, “함께”를 “함께 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25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10조의2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4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할구역내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,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----- ----- 징수 등 ----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관한 ----- 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.
1. “폐기물처리시설”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.	1. “폐기물처리시설”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.
2. “사업시행자”라 함은 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.	2. “사업시행자”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라 ----- .

현 행	개 정 안
<u>가. 생활폐기물</u> <u>가연성 폐기물, 불연성 폐기물,</u> <u>유기성 폐기물(사료화·퇴비화가</u> <u>가능한 폐기물) 및 재활용 폐기물</u> <u>별 발생 예정량</u>	<u>가. 생활폐기물 : 사업장폐기물</u> <u>외의 폐기물을 말한다.</u>
<u>나. 사업장폐기물</u> <u>사업장일반폐기물, 지정 폐기</u> <u>물, 건설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</u>	<u>나. 사업장폐기물 : 「대기환경</u> <u>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</u> <u>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</u> <u>「소음·진동 관리법」에 따라</u> <u>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</u> <u>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</u> <u>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</u> <u>는 폐기물을 말한다.</u>
6. (생략) 제5조(납부금액의 부과 등) ① 제4 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 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 및 제9조 규정 등에 의거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 한다.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 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 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 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개 발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기간	6. (현행과 같음) 제5조(납부금액의 부과 등) ① 제4 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제1항에도 ----- ----- 따라 납부금액을 분 할 납부하게 ----- ----- 착공 시부터 개 발사업 완료 시-----

현 행	개 정 안
<p>중 <u>연2회</u>, 상·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도록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경우, 상반기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6월30일,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.</p>	<p>----- <u>연 2회</u> ----- ----- <u>납부하도록</u> -----.</p> <p>③ 제2항의 경우, 상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,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
<p>제6조(고지 등) ① 구청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, 납부의무자의 주소, 성명, 산출방법, 납부금액, 납부기한, 납부장소와 납부기한,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고지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납부장</u> <u>소와 납부기한까지</u> ----- - <u>취하여야 할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납기</u> <u>가 시작되기</u>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징수 등) 가산금, 증가산금, 체납처분 등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.</p>	<p>제7조(징수 등) 사업시행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,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
<p>제8조(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) ① 납부금액의 폐기물처리</p>	<p>제8조(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) ① <u>납부금액 중</u>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있어 시설부지 소요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 ② <u>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부지 소요면적에 대한 부지매입 비용</u>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라 시설부지 -----</u> ----- -----.
1. <u>기확보한 부지의 경우</u> 는 소요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2. 부지 매입이 <u>진행중인 경우</u> 는 매입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. (생 략)	1. <u>설치부지가 확정된 -----</u> ----- 2. ----- <u>진행 중인 -----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 ④ <u>감정평가등 비용</u>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.	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감정평가 등 -----</u> ----- -----.
제9조(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) ① <u>납부금액의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</u> 의 산정에 있어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비와 <u>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비</u> 를 포함한다. ② <u>소요비용의 산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행 규칙 제9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</u>	제9조(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) ① <u>납부금액 중 -----</u> ----- ----- 「 <u>건설기술관리법</u> 」 제27조에 따를 -----. ② ----- 「 <u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행규칙</u> 」 제10조에

현 행	개 정 안
<p>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법에 따른다. 다만, 구청장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설 건설 실적이 있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소요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.</p> <p>③ 원가계산 및 견적에 적용하는 시설기준은 <u>별표1내지 3에 의하</u>며, 시설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<u>기타 사항은 구청장과 사업시행자</u>가 협의하여 정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 <p>⑤ <u>원가계산등 비용산정에 소요되</u>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.</p> <p>제10조(기금의 설치)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<u>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</u>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p>	<p>따른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별표 1부터 별표 3에</u> <u>따르며</u>----- 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원가계산 등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0조(기금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</u> -----.</p> <p>제10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</p>
<u><신 설></u>	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<u>장할 수 있다.</u>
1. 법 제6조, 시행령 제4조 및 이 조례에 <u>의한</u> 납부금액	제11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.
2. (생 략)	1.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
제12조(기금의 용도) ① (생 략) ② <u>제1항 규정에</u> 불구하고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 시설 및 퇴비화·사료화 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.	2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의 규정에도</u> ----- ----- <u>제4조제7항에 따라</u> ----- -----.
제1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(생 략)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<u>자를</u>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구 본청의 국장 2명	제1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</u> ----- -. ② -----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사람을</u> ----- 1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(이하 “구”)

현 행	개 정 안
	라 한다) -----
<u>2. 마포구의회 의원 2명</u>	<삭제>
3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에 민간전문가 <u>3명</u>	3. ----- ----- 5명
<u>⑤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</u> <u>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</u> <u>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</u> <u>연임할 수 있다.</u>	⑤ ----- ----- <u>위촉위원----- 하</u> <u>되, 한 차례만 -----.</u>
<u>⑥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</u> <u>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</u> <u>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</u>	⑥ ----- ----- <u>임위원의 남은 기간-----.</u>
<u><신설></u>	<u>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</u> <u>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</u> <u>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</u> <u>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</u> <u>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</u> <u>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⑧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</u> <u>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</u> <u>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</u> <u>할 수 있다.</u>
제1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15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 3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	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 -----

현 행	개 정 안
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	----- -----
제1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한다.	제1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 -----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7조(회의) ① (생략)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	제17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연 2회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생략)
제19조(간사 등) ①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	제19조(간사 등) ① ----- ----- 1명과 서기 1명-----.
② (생략)	② (생략)
제20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제20조(수당 등) ----- 참석----- ----- 범위에서 ----- -----.
제21조(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	제21조(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「지방재정법」 중 -----

현 행	개 정 안
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 한다.	----- ----- -----.
제22조(기금관리장부의 비치)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<u>별지 제1호 서식</u> 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·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.	제22조(기금관리장부의 비치) ----- ----- <u>별지 제1호서식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제23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<u>출납폐쇄</u>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구청장은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	제23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----- ----- ----- <u>출납폐쇄</u> 후 ----- -----. ② -----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함께 <u>서울특별시</u> ----- -----.
제24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·물품의 관리·처	제24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<u>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</u></p> <p><u>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</u></p> <p>제2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5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</u>에 ----- --.</p>